

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제9조 제2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  
로 한다.

제10조 중 "지역 및 특정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관 노후등 수요가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  
수되는 지역의 구경별 기본요금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  
대상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5.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 요금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  
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일"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0

제안년월일 : 2001년 9월 일  
제 안 자 :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례회 제3차 문화교육  
위원회(2001.6.25.)상정·질의·  
토론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  
화교육위원회(2001. 9. 4.)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임채오)  
가.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시  
기(2002. 4 예정)가 다가옴에 따라 전시공  
사를 비롯한 개관준비 업무가 증대되고, 전  
시내용 등 구체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

문이 요구되어 개관준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  
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의 구성인  
원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현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있  
으나 행정1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2인으로 보강하고, 위원수  
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  
(안 제3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위원장 또는 박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  
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시기(2002. 4 예정)가  
다가옴에 따라 전시공사를 비롯한 개관준  
비 업무가 증대되고, 전시내용 등 구체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어  
개관준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  
록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박  
물관개관준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을  
확대하려고 제안된 것임.

○ 먼저,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  
인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안 제3조  
제2항), 동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시  
장의 자문기관이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  
험을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집행기관  
의 하나인 부시장의 참여는 적절치 않으  
나, 동 위원회가 개관시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점과 부시장이 동 위원회에 참  
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향 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문이 가능하  
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위원을 현재 20인 이내서 25인 이  
내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대해(안 제3조제  
1항), 이는 부시장이 위원장 2인 중 1인으  
로 추가됨에 따라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25인으로

<p>규정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능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처럼 20인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여 25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동개정안은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안 제11조의2), 동 안은 박물관 개설 준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구체적 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임기용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 문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조직간의 역할관계가 모호하며 굳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전체회의 또는 문화위원회의 자율의결 사항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문화위원회와 소위원회간의 기능상 혼동이 예상되는 동 조항의 신설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li> </ul>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심사결과 : 원안가결</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키고, 체육공원조성 및 백범기념관건립에 따라 이미 폐쇄된 동대문씨름장과 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함.</li> <li>○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포함시키고, 동 경기장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i> <li>○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사용료부과 정수 근거 마련.</li> </ul>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이 2001.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근거, 사용료 및 위탁근거를 정하고 이미 폐쇄된 체육시설을 삭제하려고 제안된 것임.</li> <li>○ 주된 내용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기준의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경기장기본전용사용료를 잠실종합운동장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li> <li>○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측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잠실야구장을 비롯하여 6개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li> <li>○ 또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국장, 시의원, 체육,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동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나름대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li> <li>○ 따라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위탁대상시설로 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li> <li>○ 또한 동시설의 수탁자는 시설관리를 위한 조직중원의 어려움과 전문적이고 기업적</li> </ul>				
<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margin-bottom: 5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926</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 style="padding: 2px;"></td> </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p> <p>나. 회부일자 : 2001년 8월 22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2001.9.4) 상정·심의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2001. 9. 11)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p> <p>(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임재오)</p> <p>가. 제안이유</p> <p>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이 2001.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근거, 사용료 및 위탁근거를 정하고, 이미 폐쇄된 체육시설을 삭제하려는 것임.</p>	의안	926	번호		<p>2001년 9월 일 문화교육 위원회</p>
의안	926				
번호					